

광명시의회 공고 제2016- 호

광명시의회 김정호 의원 등이 추진 중인 「광명·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제1항 및 「광명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1월 21일

광명시의회의장

광명·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“광명·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”를 설치하고, 그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여, 주민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한 미래 발전방안 수립 자문, 지역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토론회·공청회·결의대회 등 개최 지원, 법률자문 지원 및 민·관 협력 등(안 제2조)
- 나. 광명·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대표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공동대표와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

- 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- 상임대표는 직무를 총괄하고,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집행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두며, 그 인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상임대표가 지명하도록 함(안 제8조)
- 시장은 대책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
- 이 조례는 “광명·시흥특별관리지역” 해제 시까지 효력을 가짐(부칙 제2조)

3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한 : 2016년 1월 28일(목)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인터넷·팩스

○ 보내는 곳 :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(우 14234)

○ 전화번호 : 02)2680-2524, 팩스번호 : 02)2680-2637

○ 전자우편 : hcnr2004@korea.kr

다. 기재내용 : 성명(단체명)·주소·전화번호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광명시의회사무국(의사팀)

마. 문의전화 : 02)2680-2524

광명·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명·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광명시와 광명시민의 유기적인 협력을 체계화하고자 광명·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“광명·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”(이하 “대책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광명·시흥 특별관리지역”(이하 “특별관리지역”이라 한다)과 관련한 “광명시”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미래 발전 방안 수립 자문
2. 특별관리지역 내 지역개발사업(취락정비, 산업단지, 유통단지, 첨단연구단지 등)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토론회, 공청회, 결의대회 등 개최 및 지원
3. 특별관리지역 필수 기반시설(저류지, 광역교통, 상·하수도 등) 설치 촉구
4. 특별관리지역 지정기간(2025. 4. 30.) 만료시 미개발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
5. 특별관리지역 관련 법률자문과 지원
6. 특별관리지역 관련 민·관 협력
7. 그 밖의 “광명시장”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또는 대책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추진

제3조(구성 등) ① 대책위원회는 상임대표 1명을 포함하여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시가 선거구인 국회의원 또는 경기도의회의원, 광명시의회의원
2. 집단취락 및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 소재 토지주, 거주자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
3. 시에서 활동 중인 각급 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
4. 시 미래 발전에 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

② 상임대표는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대책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.

③ 대책위원회에는 상임대표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공동대표와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임기) ① 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
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
4.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
5. 그 밖에 위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6조(상임대표의 직무) ① 상임대표는 대책위원회를 대표하며, 그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상임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집행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상임대표는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대책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대책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제8조(집행위원회) ①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.

② 집행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집행위원은 상임대표가 지명하고,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에서 호선한다.

- ③ 집행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다.
- ④ 집행위원회 회의는 제7조 대책위원회 회의를 준용한다.

제9조(간사와 서기)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

제10조(대책위원회의 사무처리)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대책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
2. 대책위원회 등에 부의되는 안건 및 회의 준비 등에 관한 사항
3. 대책위원회 등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·연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대책위원회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

제11조(예산의 지원) 시장은 대책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조사·연구의뢰) 대책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,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·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13조(적용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, 「광명시 재무회계 규칙」 등 관련법규를 적용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특별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발	의	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(외 4인)
소	관	융복합도시정책과
입	안	김정호 의원 02-2680-2509

비용 추계서

1.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

- 광명·시흥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토론회 및 공청회 : 2,000,000원 × 5회 = 10,000,000원
- 결의대회 : 20,000,000원 × 2회 = 40,000,000원
- 주민설명회 : 400,000원 × 12개소 × 5회 = 24,000,000원

나. 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구분	계	2016	2017	2018	2019	2020
계	370,000	74,000	74,000	74,000	74,000	74,000
토론회 및 공청회	5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
결의대회	200,000	40,000	40,000	40,000	40,000	40,000
주민설명회	120,000	24,000	24,000	24,000	24,000	24,000

다. 연도별 비용 추계표: 따로 붙임

3. 작성자: 용복합도시정책과장 박 찬 호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: 천원)

구 분		계	1차년도 (2016년)	2차년도 (2017년)	3차년도 (2018년)	4차년도 (2019년)	5차년도 (2020년)
세입	계	-	-	-	-	-	-
	해당없음	-	-	-	-	-	-
세출	합 계	370,000	74,000	74,000	74,000	74,000	74,000
	토론회 및 공청회	5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
	결의대회	200,000	40,000	40,000	40,000	40,000	40,000
	주민설명회	120,000	24,000	24,000	24,000	24,000	24,000
합 계		370,000	74,000	74,000	74,000	74,000	74,000
재원	의존재원	소 계	-	-	-	-	-
		보조금	-	-	-	-	-
		지방교부세	-	-	-	-	-
조달	자체수입	소 계	370,000	74,000	74,000	74,000	74,000
		지방세	370,000	74,000	74,000	74,000	74,000
		세외수입	-	-	-	-	-
지방채		-	-	-	-	-	-
기금		-	-	-	-	-	-
공기업특별회계		-	-	-	-	-	-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-	-	-	-	-	-

관 계 법 령 발 취 서

관 계 법 령	내 용
지방자치법	<p>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무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가. 지역개발사업</u></p>
지방재정법	<p>제32조의2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 ① 지방보조금(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해당 지방보조사업(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성격, 지방보조사업자(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</p> <p>② <u>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(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수 없다.</u></p> <p>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 <p>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<u>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. <u>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
광명시 보조금 관리조례	<p>제4조(보조대상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2.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. <u>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